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공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학생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률,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만약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가요?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누구나 어디에서든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디다는 이유로,
아직 배워야 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유보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률에서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로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비매몰>



만화로 읽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누구나 어디에서든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디다는 이유로, 아직 배워야 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유보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로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만화로 읽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나래의 꿈

★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

선생님, 우리 친구해요

★ 소통과 참여의 학교운영 실현

정현이의 봄

★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

우리에게도 사생활이 있거든요

★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규리, 학생자치의 의미를 깨닫다

★ 학생자치활동 보장

인권, 넌 뭐니?

★ 인권교육 활성화

우리의 권리는 소중한

★ 인권지킴이